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강의실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 순서 : ①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②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③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④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방심위 독립성과 시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감사원 결정을 규탄한다

-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인터넷’과 인터넷상 정보의 ‘내용’을 심의하는 ‘통신심의 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심위 사무처 직원에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과도한 절차상의 주의의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사실 통신심의 제도 자체가 다소 기괴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은 시공간의 경계가 사실상 없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표현물을 유통하고, 실시간으로 유통 상황도 바뀌며,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무한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공간입니다.
- 이러한 무한한 공간의 무한한 양의 정보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는 사실 실효성도 없는데 행정력은 지나치게 크게 요구되고 있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 통신소위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20만건의 정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2022년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심위는 86차례 통신소위를 열어 약 20만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86차례 열린 통신소위에서 평균 18분 동안 2434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든 시간이 평균 0.5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개별적 심의 안건 정보에 대한 위원의 검토와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법적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나 정치적인 사안만 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불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과도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환경에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모든 안건 정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내의 모든 망 사업자 정보통신망별로 유통 여부를 조사하거나, 구두, 전화로 불명확하게 들어오는 신고까지 다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리라거나, 모든 신고 자료를 원본으로 첨부하여 검토하고 보고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국정원 신고 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만 특수하게 그렇게 처리하라는 것도 차별적 행정,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이 민주노총에게 보낸 연대사 심의의 절차적 문제도 크지 않습니다.
- 감사원은 위 연대사에 대한 첫 심의 때 방심위가 국정원 신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 ‘증거불충분’ 사유로 해당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그 표현물의 ‘내용’만을 검토하고 그 표현 내용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그 제반 사정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표현물의 전체 내용이 제공되어 위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한 결과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는 적절하게 완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제반 사정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기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절차적 하자를 일으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실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무팀 검토, 특위 자문, 외부 로펌 검토까지 거친 결과입니다.
- 무엇보다 감사원은 위 두 정보가 현재 방심위에 의해 국보법 위반 정보로 시정요구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정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정보들이 방치된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국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개시하지 않고, 통신소위에 증거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등 심의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다.  
“그 결과 2건은 국정원 심의요청 후 통신소위에서 시정요구로 결정되기 까지 각각 7개월, 10개월간 일반 공중에게 유통되는 결과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 그러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방심위 기관과 통신심의 제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당연하게도, 방심위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방심위 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해당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또 판례에 의하여도 이들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항은 다른 국가보안법 조항들과 달리 물리적 행위(act)가 아닌 언사(speech) 자체를 범 죄시키고 있어 UN인권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는 위헌의 소지가 다 분한 조항입니다.
- 이러한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국가 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역시 이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3.06.28. 선고 2010도3810 판결.)라야 한다고 하여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조선 관광 사이트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게 위해를 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뿐 더러, 연대사 역시 그러한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 연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보수정권,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면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오히려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시 연대사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한 문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표현물이었다면 통일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연대사에 대한 방심위의 차단 처분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는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렇듯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방심위 직원이 엄중히 다루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공중에게 유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의 책임을 묻는 감사 결과는 과도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최근 국보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데 방심위가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북한 관련 콘텐

츠를 위법하게 차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기관, 과학기술, 금융기관을 소개하는 사이트도 차단하고, 북한 여성, 소녀가 출연하여 북한의 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형식의 송아, 유미 등의 계정, 채널을 차단하고, ‘친근한 아버지’라는 제목의 김정은 찬양 동영상도 차단 결정함. 이러한 정보는 북한에 대한 일반적 연구, 선전 방식 연구, 비평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국정원과 방심위의 국가보안법의 위헌적 해석, 적용으로 시민이 북한에 대하여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방심위가 이렇듯 국정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북한 관련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색깔론을 강조하여 현 정부의 정체성 성립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려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보법 관련 심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차단 요청)하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지적하면서 국정원 김을 빼거나 발목 잡거나 하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고, 허연희 위원은 “국가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 말이 뭐 필요 있겠나”라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 관계기관의 요청은 심의 개시의 요건에 불과하고, 방심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 중립적인 지위에서 표현물의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위원의 이러한 발언이야말로 방심위 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실 심의, 직무를 태만히 이행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방심위가 국정원의 신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가 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철퇴를 맞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 영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http://northkoreatech.org>)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한 사건입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이 다수였음.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된 매체였습니다. 국정원의 만연한 신고와 방심위의 만연한 수용이 빚은 결과입니다.
- 국정원과 방심위에 합작에 의한 북한 관련 콘텐츠 검열이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원의 결정 역시 방심위 사무처에게 국정원의 신고에 따른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 지원에 있어서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국정원 신고, 국가보안법 논란 정보를 차별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 심의 기능의 독립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북한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과잉 차단, 과잉 검열을 부추겨 시민의 알권리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재심사를 촉구합니다.

## 방심위의 독립성 훼손과 직원 길들이기 목적의 징계를 규탄한다!

안녕하세요. 혐오와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사회구성원, 다원적인 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개인의 권리이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매체,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즉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민간독립기구인 이유입니다. 특히 내용 심의는 헌법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에 독립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류희림 위원장이 들어선 이후로 정권비판적인 언론이나 방송에 대한 법정 제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통제가 방심위 직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자료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며 방심위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 감사원을 끌어들이는 사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원의 통제정치가 방심위에까지 이르렀으며, 방심위는 감사원을 끌어들이 방심위 직원 징계를 통한 길들이기,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당 팀장과 직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심의 지원업무 2건을 부당하게 수행했다며 감사원은 문책·주의 요구할 것을 방심위원장에 통보했습니다. 하나는 조선관광사이트와 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에 북한의 노동직업총동맹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보낸 축전입니다. 경찰청에서 보낸 자료와 그 외 자체 추가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했음에도 국정원에서 보낸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며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봐도 무리한 억지감사입니다.

이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독립기구이지만 방심위도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징계한 근거는 심의할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심의에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단지 국정원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 침해입니다. 경찰청 자료며 내부 법무팀 자료며 다 넣었습니다. 솔하게 많이 정부부처로부터 오는 의견들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심의를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결과는 방심위의 결정에 국정원의 의견은 무조건 수용하라는 해석에 다름 아닙니다. 즉, 국정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결정만을 내리게 된다면 방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합니다. 방심위는 국정원의 산하부서가 아니라 독립적 기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니다. 통일부의 승인을 확인한 축전조차도 국정원이 문제 삼으면 무조건 불법정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정보가 됩니까. 심지어 국정원이 재심의를 요구하며 보낸 자료는 변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심이라니요. 이것이야말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집행이 아닙니까.

셋째, 자의성이 높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방심위가 무조건 받아쓰기로 심의 결정한다면 방심위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해당 글은 이미 작년 12월 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심이라고 국정원의 의견을 넣지 않았다고 부실이고 징계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위에 있는 국정원이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국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방심위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 현실, 국정원은 자의적 비밀운영을 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심위의 독립적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1년 유엔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도 권고한 사항이지만 13년이 지난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뒤로가고 표현의 자유가 뒤로 가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당시 프랑크 라위 특별보고관은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 결과에 따른 권고 “47항에서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나 유력한 기업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기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정보의 게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 정보를 삭제하는 현행 절차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인용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에 기술된 ‘불법 정보’의 유형이 법적 명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97항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부당하게 직원들을 길들이려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관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8. 6. 13.]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021. 6. 8.>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감사원은 방심위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 철회하라!

감사원은 지난 13일 41쪽 분량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방심위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라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지부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며,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일부 망에서 유통됨을 인지하고도 직원이 자체적으로 심의에 상정하지 않은 점', '국가정보원이 첨부한 자료가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주요 문책 사유다.

우선 '조선관광' 사이트의 경우, 사무처 담당직원이 방심위 사내 인터넷망(KT) 등에서 접속되지 않자, 개인 휴대폰(LGU+)으로도 접속되지 않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 한 후에 '각하'로 종결(23. 4.)하였다. 이후 국정원에서 SKT망에서는 사이트가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유선상 연락 하였으나 확인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고, 5개월 뒤(23. 9.)에야 '3분기 심의요청'에 포함시켰다. 추가 요청 후, 방심위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사무처 직원의 대응이 아니라, 일부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늦장 대응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명령권 행사 등 시정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념적 내용으로 이에 대해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어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심의 27,610건 중, 방심위가 자체인지로 심의한 것은 0건으로 전무하다.

또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의 경우, 사무처는 해당 게시물이 통상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심위 법무팀 자문', '통신특위 자문', '2곳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치며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의 자문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정보원 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검토되었으며, 실제로 위원들도 해당 논거를 근거로 심의에 참여하였음이 확인(제12차 통신소위 회의록, '23. 2.)된다. 무엇보다 방심위는 내용에 대한 심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기관의 자료가 절대적 판단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작년 9월 25일부터 방심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시정요구 효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 이번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결과에는 이와 같은 사안이 배제 혹은 누락되어 있다. 감사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감사원은 방심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훼손하는 취지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

2024년 5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